

우리 나라 축산자조금법 입법 추진현황

1. 향후일정과 부탁의 말씀

1. 2001. 6. 22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정식 채택되어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전오을위원장)에 회부하고, (원처주관으로 공청회를 갖기로 의결했습니다.)
2. 7~8월 중에 법률안을 제안한 4단체의 의견과 거출처 등 관련단체 (안)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 하순경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 9월 정기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 순으로 통과시킬 목표입니다.
4. 전 축산인, 우리 양돈인의 10여년간 숙원사업인만큼 회원님, 전 양돈인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분법이 통과되어도 시행경과 시행규칙의 제정과정이 필요하고, 거출처(양돈-도축장예정)의 설득과 이해가 되따라야 합니다.

- 홍보부 -

2. 축산자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가. 제안경위

2000년 8월 14일 원철희, 김영진, 주진우 의원 외 21인의 소개로 전국한우협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및 대한양돈협회장 이규석, 김남용, 최상백 외 1인으로부터 축산업자조금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에 대하여 제218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2001.2.19)에서 상정하여 제안설

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청원안심사소위원회는 제222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2001. 6. 21)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청원안의 상당부분 내용을 반영하고 위현성 문제 등 미지한 부분을 보완해서 대체·초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 법의 정부지원 규정과 관련하여 축산법중개정안 초안을 별도로 마련함.

따라서, 청원안은同一 대체초안 및 축산법개정법률안 초안을 첨부시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하기로 함.

제 222회 국회(임시회) 제 3차 위원회(2001.6.22)는 청원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청원안을同一 대체 초안 및 축산법 중개정법률안초안을 첨부시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회(○○회) 제○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나. 제안이유

축산업계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해서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골자

가. 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

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와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원확보를 위하여 축산물 단위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나. 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하되, 축산업자가 선출한 대의원의 5분의 4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일괄 징수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거출금의 일괄징수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3년마다 축산업자 중에서 200인 이상 300인 이하의 대의원을 선출함(안 제7조).

라. 자조금 사업의 성과가 미지한 경우 등 기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산업자는 전국 선출권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해당 축산물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축산업자의 연서를 얻어 대의원 선출을 다시 요구함으로써 거출금의 일괄징수에 대한 재투표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거출금의 한도는 해당 축산물의 기준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되 그 금액은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축산단체는 거출금의 징수업무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 및 축산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단체의 거출금 징수업무에 대한 수탁의뢰를 거부할 수 없음(안 제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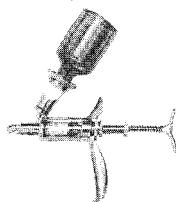
사. 자조금은 축산물 소비홍보사업,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및 기타 자조금의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암(안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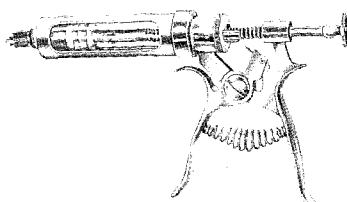
아.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산단체에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대의원 찬반투표를 거쳐 거출금을 일괄징수하는 때에는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안 제14).

자.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축산업자로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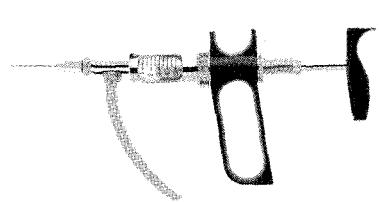
각 종 주 사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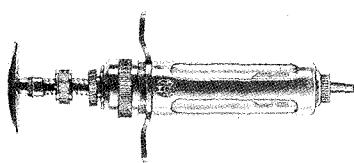
① FERROMATIC 주사기(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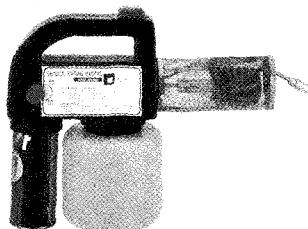
② REVOLVER주사기(3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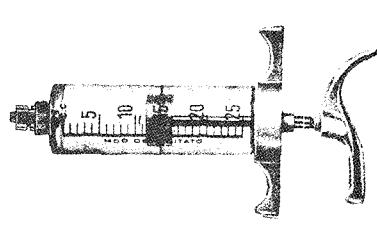
③ SOCOREX 연속주사기(1~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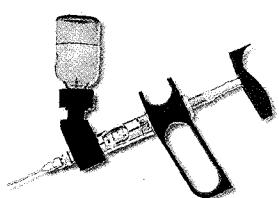
④ 철제주사기(10, 2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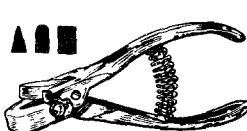
⑤ 휴대용 연막소독기(가스사용)



⑥ P.V.C주사기(반영구)10ml, 20ml



⑦ SOCOREX 연속주사기(병장착용)



⑧ 이각기(귀절단)



강화축산

주소: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83-11

☎ 305-2548, 374-7013

H·P : 011-9787-2548

FAX : (02) 308-1030